

경기도 공고 제2020 -1248호

- 2020년도 경기도 소방공무원(항공분야) -
실기시험 합격자 명단 및 신체검사, 인·적성 검사, 서류접수 일정 공고

2020년도 경기도 소방공무원(항공분야) 실기시험 합격자 명단 및 신체검사, 인·적성 검사, 서류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2일

경 기 도 지 사

1 실기시험 합격자

○ 합격자 현황 : 10명

구분 \ 분야	소계	조종사	정비사	운항·관제사
인 원	10	3	3	4

○ 합격자 명단 : 【붙임1】 참조 * 응시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수험번호로 발표함.

2 신체검사

○ 기 간 : 2020. 6. 23.(화) ~ 6. 25.(목) 【3일간】

○ 장 소 : 3개소 【붙임 2】 참조

- 아주대학교병원(수원시 영통구 소재) : 검사비용 55,000원
- 동수원병원(수원시 팔달구 소재) : 검사비용 55,000원
- 의정부 백병원(의정부 소재) : 검사비용 40,000원

※ 3개소 지정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는 인정하지 않으며, 3개소 중 1개소의 병원만 선정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 대 상 : 10명

구분 \ 분야	소계	조종사	정비사	운항·관제사
인 원	10	3	3	4

※ 조종사는 「항공안전법」 제 40조에 의한 「항공신체검사증명서」로 대체함.

- 준비물 :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증명사진(3.5×4.5, 2매), 수수료(응시자 부담)
 - 검사방법 :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에 따라 검사 실시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 2항 「별지 제1호 서식」 ⇨ 【붙임 3】 참조
- ※ 병원별 검사시간이 상이하고, 신체검사 및 검사 결과서 발급에 일정기간이 소요되므로 응시자는 원하는 지정 병원에 사전 문의 후 예약 및 검사 실시
- 합격자 결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체조건 및 건강 상태에 적합한 사람 모두를 합격자로 하며,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신체검사)에 따라 신체검사 후 '신체검사서'의 합격여부로 결정
 - 신체조건 및 불합격 판정기준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 3항 「별표 3」 ⇨ 【붙임 4】 참조
 -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 7항 「별표 5」 ⇨ 【붙임 5】 참조
 - 복 장 : 남자 - 단추 없는 면 티 상의 착용 권장, 여자 - 자유복
 - 합격자 발표 : 불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3 인·적성 검사

- 일 시 : 2020. 7. 1.(수) 10:00, 13:00
 - (오전 10:00 검사) 09:30까지 입실 6명(조종사 3, 정비사 3)
 - (오후 1:00 검사) 12:30까지 입실 4명(운항·관제사 4)
- 장 소 :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대연회장【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66(어진동)】
- 대 상 : 10명

구분 \ 분야	소계	조종사	정비사	운항·관제사
인 원	10	3	3	4

- 검사방법 : 집합 검사 * 검사결과는 면접시험 참고자료로 면접위원에게 제공
- 검사비용 : 경기도 지원 (응시자 부담 없음)
- 준 비 물 :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 만료 전 여권),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사인펜 등)

4 서류접수(전형)

- 기 간 : 2020. 7. 6.(월) 09:00 ~ 7. 8.(수) 18:00 (점심시간 12:00 ~ 13:00까지 제외)
- 장 소 : 경기도소방학교 인재개발팀 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붙임 6】 참조
- 대 상 : 10명

구분 \ 분야	소계	조종사	정비사	운항·관제사
인 원	10	3	3	4

- 제출서류 : 【붙임 7】 참조 * 당일 미 제출서류는 각 분야별 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제출
 - 발급 기준일 : 서류접수 최종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 제 출 방 법 : 분야별 서류를 목록 순으로 편철하여 클립 또는 집게로 고정하여 해당기간에 본인이 직접 제출 (우편접수 불가)
- 합격자 발표 : 불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서류 전형 추후 별도 시행

5 응시자 유의사항

□ 공통사항

- 대리 검사자 등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에 의하여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됨.
- 본 일정 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https://119.gg.go.kr>) 「알림마당」의 「고시/공고」란 및 경기도소방학교 홈페이지(<https://119.gg.go.kr/academy>) 「시험정보」의 「신규채용 / 공고·고시」란에 공고(공지)함.

□ 신체검사 유의사항

- 응시자는 경기도에서 지정 한 종합병원(3개소) 중 1개소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신체검사 결과[정밀검사(재검사) 포함]는 실시한 병원에서 일괄 경기도소방학교로 제출하니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검사병원이 다른 건강검진 등을 함께 실시하고 있으므로 공고 즉시 사전예약을 하여야만 기간 중 신체검사가 가능함.
- 신분증 등 준비물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검사당일 해당병원에서 접수를 마친 후 신체검사에 임하기 바람.
- 검사당일 최소 8시간 전부터 신체검사 종료시까지 공복(음식물, 약물, 물, 담배, 껌, 커피 등 금지)을 유지하여야 함.
- 색각 이상자의 경우 국·공립병원 및 종합병원 등(개인병원 제외)에서 사전에 아노말로스코프(색각경) 검사를 받아 지원 가능 여부 확인 후 응시 바람.
- 색맹 또는 색약 보정렌즈 등 부정합 기구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당해 시험에 불합격 처리됨은 물론, 부정행위자로 불이익을 받을수 있음.
- 신체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불합격 처리되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까지 검사를 완료하기 바람.
- 검사병원에서 문진(설문조사 포함) 등 진료 시 허위 답변(작성)으로 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당해 시험 불합격 처분 및 임용이 취소 될 수 있음.

□ 인 · 적성검사 유의사항

- 응시자는 해당일자에 시간 엄수하여 등록하여야만 응시가 가능(일자 및 시간 변경 불가)하며, 등록 마감시간까지 등록장소에 입장하지 않거나 응시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응시포기로 간주함.
- 인 · 적성 검사의 결과는 면접위원에게 제공되는 자료로써 미 응시 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 인 · 적성검사장에는 응시자 이외는 출입할 수 없음.

□ 서류접수 유의사항

- 제출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연락하여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응시자는 즉시 보완요구에 응하여야 함.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관련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 시 본인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서류전형에 응하지 않는 경우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불합격 처리됨으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까지 서류제출을 완료할 수 있도록 유의하기 바람.

- 사본의 규격은 A4를 기준으로 하며, 자격(면허)증 사본 이외의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초본, 법원 판결문 등)를 제출하여야 함.

- 붙임 1. 실기시험 합격자 명단 (수험번호 순) 1부.
2. 신체검사 장소 안내 1부.
3.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
4.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1부.
5.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 1부.
6. 서류접수 장소 안내 1부.
7. 서류접수(전형) 제출서류 안내 1부.
- 서식 7-1) 조종사 경력경쟁채용 증빙서류 세부목록 1부.
- 서식 7-2) 정비사 경력경쟁채용 증빙서류 세부목록 1부.
- 서식 7-3) 운항·관제사 경력경쟁채용 증빙서류 세부목록 1부.
8.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9. 경력(재직) 증명서 1부.
10. 근무경력 사실 확인서 1부.
1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문 등 1부. 끝.

<문의전화>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까지 제외]

◆ 채용시험(실기시험, 인·적성검사, 면접시험 등) 문의

- 문의처 : 소방청 항공통신과
- 연락처 : 044-205-7703

◆ 인터넷 원서접수 방법, 접수증 및 응시표 출력, 원서접수사이트 장애 관련 문의

- 문의처 : (주)에니아소프트
- 연락처 : 043-219-1332

◆ 서류접수(전형), 신체검사 문의

- 문의처 : 경기도소방학교(인재개발팀)
- 연락처 : 031) 329 - 0321 ~ 5
-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천덕산로11번길 42(봉명리)

붙임 1

실기시험 합격자 명단(수험번호 순)

조종사 분야 (3명)

순번	수험번호
1	1002
2	1007
3	1009

정비사 분야 (3명)

순번	수험번호
1	2005
2	2016
3	2018

운항·관제사 분야 (4명)

순번	수험번호
1	3004
2	3040
3	3053
4	3073

붙임 2

신체검사 장소 안내 : 찾아오시는 길은 해당 병원 홈페이지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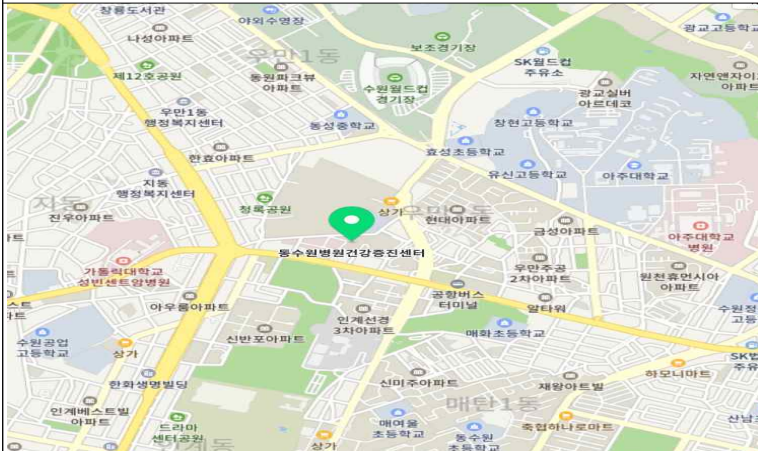
아주대학교병원 별관(웰빙센터) 4층 건강증진센터 ☎ 1688-2118 → 2번

↳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원천동 산 26-6)]



동수원병원 건강증진센터 ☎ 031-210-0285, 0777, 0294

↳ [경기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65(우만동 157-7)]



의정부 백병원 지하 1층 건강증진센터 ☎ 031-843-8383, 856-8111

↳ [경기 의정부시 금신로 322(신곡동 519-11)]



붙임 3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 2항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사 진
(3cm×4cm)

※ 압인 또는 계인

수험번호	응시분야	성 명	생 년 월 일

검 사 내 용

신 장			cm		체 중		kg	
					혈 압			
시력	맨눈	좌: 우:	색 신 (색 각)			청력	정상	좌: 우:
	교정	좌: 우:					교정	좌: 우:
안 질 환					이 비 인 후 질 환			
치 아					호 흡 기 질 환			
간 질 환					신 경 질 환			
소 화 기 질 환					피 부 질 환			
순 환 기 질 환					정 신 질 환			
비 뇨 기 질 환					혈청검사(매독)			
흉 부 X선 검 사					기 타			

위와 같이 검사하였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검 사 결 과	[] 합 격	불합격 또는 합격 사유
합 격 여 부	[] 불 합 격	
	[] 판 정 보 류	

판정보류 사유 및
정밀검사 필요 여부

*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주소 :

전화번호(☎) :

의료기관의 장

(인)

유효기간 : 판정일로부터 1년

210mm× 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의료기관]

1. 검사내용란에는 검사자가 검사결과를 기재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필수사항: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 기재

- 검사결과 기재 예: 질병명(심부전증, 백혈병, 척수종양 등) 또는 정상, 양호, 이상 없음 등

2. 검사결과 합격여부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의료기관의 장이 판정결과 등을 해당 []안에 √ 표로 표시하고 해당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판정보류 사유: 합격 또는 불합격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여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가. 합격사유 기재 예

- ‘만성골수백혈병’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官解)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함
- ‘매독(syphilis)’ 양성으로 나타나나, 유효적절한 치료로 전염성이 없음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나. 불합격사유 기재 예

- 두 눈의 교정시력이 좌측 0.1 우측 0.1
- 혈소판 수가 혈액 1마이크로리터(microliter) 당 6만개 이하인 ‘혈소판 감소 자색반’으로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예상됨

3. 검사결과에 대한 판정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별표 3에 의하여야 합니다.

210mm × 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 4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별표3]

구 분	내 용
1. 일반 결합	가. 예후가 불량한 악성종양 나. 난치의 사상균성 장기질환 다. 난치의 사상충병(휘다리아병 · 트리빠노쪼마병 · 일본주혈흡충병) 라. 유효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법정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없어지지 아니한 사람
2. 비·구강· 인후기관 계통	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회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구강·인후·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나. 정상적인 식사섭취가 곤란한 식도협착
3. 치아 계통	가. 진구성인 아래턱관절강직, 음식물을 씹는 근육(저작근)의 질환 및 손상으로 30mm 이상 입을 벌릴 수 없게 된 사람 나. 아래턱 관절이 탈골되어 다시 맞추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다. 진구성 복잡악골절 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라. 발음기능 및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잃은 사람
4. 흉부	가.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 다. 비결핵성 질환인 중증 만성천식증, 중증 만성기관지염, 중증 기관지 확장증, 중증 폐기증, 중증 활동성 폐진균질환
5. 심장· 혈관 및 순환기 계통	가. 심부전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맥(150회/분 이상) 또는 기질성 부정맥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방실전도장애 라.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맥류 마. 유착성 심낭염 바. 확진된 관상동맥질환(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사. 폐성심
6. 복부장기 및 내장 계통	가.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있는 비장증대 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만성활동성간염 또는 간경변증 다. 거대결장·게실염·회장염·궤양성 대장염으로서 난치인 경우
7. 생식 비뇨기 계통	가. 중증 요실금 나. 진행성 신기능(腎機能) 장애를 동반하여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신질환(腎疾患) 다.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활동성 신결핵(腎結核) 또는 생식기결핵 라. 약물 등으로 조절되지 않는 신증후군(腎症候群)

구 분	내 용
8. 내분비 계통	가. 중증의 갑상선 기능이상으로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비가역적인 합병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진행성 거인증 또는 말단비대증 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반 질환이 합병되어 있는 에디슨씨병 라. 현재 뇌하수체 기능 장애에 대한 약물(호르몬)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뇌하수체선종의 기계적 압박에 의한 비가역적인 뇌신경장애 또는 뇌기능장애 등의 합병증 마.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당뇨병성 또는 대사질환성 합병증
9. 혈액 또는 조혈 계통	가.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치료하기 곤란한 혈우병 나.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재생불량 빈혈 라.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을 포함) 마. 진성적혈구 과다증 바. 백혈병
10. 신경 계통	가.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나.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다. 만성 진행성·퇴행성 질환 및 탈수조성 질환(유전성 무도병,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보행실조증, 다발성경화증 포함) 라. 뇌 종양 및 척수 종양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외상성 신경질환 바.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말초신경질환 사. 전신성·중증 근무력증 및 신경근 접합부 질환 아.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11. 사지	가. 소방장비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거나 필기능력이 없는 사람 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골절·관절 질환자
12. 귀	가. 두 귀 중 하나 이상의 교정청력이 40dB 이상인 사람
13. 눈	가. 두 눈 중 하나 이상의 맨눈시력이 0.3 미만이고 두 눈 중 하나 이상의 교정시력이 0.8 미만인 경우 나. 두 눈의 시야협착이 모두 1/3 이상인 경우 다.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활동성·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기능에 장애가 되는 질환 라. 중심 시야 20 이내의 복시를 가져오는 안구운동장애 및 안구진탕(眼球振盪)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색각이상[색맹 또는 적색약(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14. 정신 계통	가.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지체 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성격 및 행동장애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병 라. 마약중독 및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자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간질
15. 혈압	가. 고혈압 : 수축기 145mmHg을 초과 또는 확장기 90mmHg 초과 나. 저혈압 : 수축기 90mmHg 미만 또는 확장기 60mmHg 미만
16. 운동신경	가.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있는 경우

붙임 5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 7항 「별표 5」

부분별	합격기준
체격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력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거나 교정 시력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색각(色覺)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붙임 6

서류접수 장소 안내

※ 이용 교통수단 및 거리 등 사전에 필히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소방학교(본관동)】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천덕산로11번길 42(봉명리) (☎ 031-329-0321~5)



⊙ **교통편 안내**

▶ **시내버스 이용(11번 가곡여객)**

- 이용방법 : 오산역 앞에서 남사면 성은리행 11번 버스(가곡여객) 탑승
⇒ 봉명4리 하차(GS주유소 앞)
- 소요시간 : 약 55분

▶ **택시 이용**

- 이용방법 : 오산역 앞 택시 승강장에서 탑승 ⇒ 경기도소방학교(본관동) 하차
- 소요시간 : 약 30분

▶ **자가용 이용**

1. **경부고속도로 오산 IC 이용**

경부고속도로 오산 요금소 전방 100m 지점 ⇒ 고가 밑으로 좌회전 후 800m 직진 ⇒ 안성(양성)방향 좌회전 ⇒ GS주유소 좌회전 ⇒ 경기도소방학교

2. **1번국도 이용**

한전사거리에서 좌회전 또는 우회전 ⇒ 안성(양성)방향 직진 ⇒ GS주유소 좌회전 ⇒ 경기도소방학교

붙임 7

서류접수(전형) 제출서류 안내

■ 「조종사」 경력경쟁채용 증빙서류 세부목록 [서식 7-1]

※ 제출여부에 '○' 표기 후, 첫 장에 철하여 제출

성 명	응시번호	응시분야	임용예정 시·도	임용예정 직급	응시요건
		조종사	경기도	소방위	일반경력

순번	제 출 서 류	제 출 여부
【공통사항 제출서류】		
1	「조종사」 경력경쟁채용 증빙서류 세부목록 1부. 【서식 7-1】	○
2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붙임 8】	
3	기본증명서 1부.	
4	주민등록 초본 1부.	
5	운전면허증 사본 1부.	
6	운전경력증명서 1부.	
7	경력(재직) 증명서 1부. 【붙임 9】	
8	소득금액증명원 1부.	
9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10	비행경력증명서(최종비행일 명시) 1부. ※ 모의비행 시간 미포함	
11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육상다발 자격증 사본 1부.	
12	계기비행자격증명서 사본 1부.	
13	전파전자통신기사(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 사본 1부.	
14	「항공안전법」 제40조에 의한 항공신체검사증명서(최종시험일 기준 유효할 것) 1부.	
【해당자만 제출서류】		
15	자력표(국방부), 병적기록표(병무청), 군부대 경력증명서 중 1부.	
16	의사상자 등 증명서류 1부.	
17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류 1부.	
18	근무경력 사실 확인서 1부. 【붙임 10】	
19	근로계약서 사본 1부.	
20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1부.	
21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예정증명서 1부.	

■ 「정비사」 경력경쟁채용 증빙서류 세부목록 [서식 7-2]

※ 제출여부에 '○' 표기 후, 첫 장에 철하여 제출

성 명	응시번호	응시분야	임용예정 시·도	임용예정 직급	응시요건
		정비사	경기도	소방장	일반경력

순번	제 출 서 류	제 출 여부
【공통사항 제출서류】		
1	「정비사」 경력경쟁채용 증빙서류 세부목록 1부. 【서식 7-2】	○
2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붙임 8】	
3	기본증명서 1부.	
4	주민등록 초본 1부.	
5	운전면허증 사본 1부.	
6	운전경력증명서 1부.	
7	경력(재직) 증명서 1부. 【붙임 9】	
8	소득금액증명원 1부.	
9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10	회전익 항공정비사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만 제출서류】		
11	자력표(국방부), 병적기록표(병무청), 군부대 경력증명서 중 1부.	
12	의사상자 등 증명서류 1부.	
13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류 1부.	
14	근무경력 사실 확인서 1부. 【붙임 10】	
15	근로계약서 사본 1부.	
16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1부.	
17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예정증명서 1부.	

■ 「운항·관제사」 경력경쟁채용 증빙서류 세부목록 [서식 7-3]

※ 제출여부에 '○' 표기 후, 첫 장에 철하여 제출

성 명	응시번호	응시분야	임용예정 시·도	임용예정 직급	응시요건
		운항·관제사	경기도	소방교	일반경력

순번	제 출 서 류	제 출 여부
【공통사항 제출서류】		
1	「운항·관제사」 경력경쟁채용 증빙서류 세부목록 1부. 【서식 7-3】	○
2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붙임 8】	
3	기본증명서 1부.	
4	주민등록 초본 1부.	
5	운전면허증 사본 1부.	
6	운전경력증명서 1부.	
7	경력(재직) 증명서 1부. 【붙임 9】	
8	소득금액증명원 1부.	
9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10	운항관리사 또는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만 제출서류】		
11	자력표(국방부), 병적기록표(병무청), 군부대 경력증명서 중 1부.	
12	의사상자 등 증명서류 1부.	
13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류 1부.	
14	근무경력 사실 확인서 1부. 【붙임 10】	
15	근로계약서 사본 1부.	
16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1부.	
17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예정증명서 1부.	

【제출서류 세부 안내사항】

- ① (조종사, 정비사, 운항·관제사) 경력경쟁채용 증빙서류 세부목록 1부
 - 서식7-1, 서식7-2, 서식7-3 붙임 참조하여 해당분야별 작성하여 제출
- ②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경기도소방학교 등록 장소에서 배부 후 작성, 자필 서명
- ③ 기본증명서 1부
 - 응시자 본인기준, 상세로 발급 및 주민등록번호(뒷번호는 본인만 공개) 모두 기재
- ④ 주민등록표 초본 1부
 - 과거 주소변동 상세이력 기재 및 병적사항이 전체 나오도록 제출
- ⑤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A4 용지에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증 앞면과 뒷면을 1장으로 복사하여 제출
- ⑥ 운전경력증명서 1부
 - 경찰서 방문 발급 또는 경찰 민원포털(<https://minwon.police.go.kr>) 및 정부24(<https://www.gov.kr>)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
 - 면허 취득 후 "전체 경력" 으로 설정 발급(면허이력, 법규위반, 사고내역 등 전체 포함)
- ⑦ 경력(재직)증명서 1부 : 【붙임 9】를 서식으로 제출하되 근무기관 자체서식이 【붙임 9】의 내용을 모두 포함할 경우 자체서식으로 제출 가능
 - 자격(면허)증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로서 근무기간·근무부서·직책·담당업무(당해분야 세부 직무내용 정확히 기재)·재직 시 징계사항 등의 경력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징계사항 기재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한정함.
 - 경력증명서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서명(날인), 발행기관 직인 및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하고,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週)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분야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하여야 함.
- ⑧ 소득금액증명원 1부.
 - 경력기간 전체, 국세청 발급 1부.
 - 무인민원발급기, 홈텍스(www.hometax.go.kr),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 2020년도 소득금액증명은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또는 「월별 급여명세서」로 해당기관의 직인이 포함된 경우만 인정함.
 - ※ 경력증명서상의 경력은 공적서류에 의하여 경력증빙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1부.

⑩ 각 분야별 자격증 등

(조종사)

- 비행경력증명서(최종비행일 명시) 1부.
↳ 모의비행 시간 미포함
-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육상다발 자격증 사본 1부.
↳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 최초교부 (발급)본 포함
- 계기비행자격증명서 사본 1부.
- 전파전자통신기사(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 사본 1부.
- 「항공안전법」 제40조에 의한 항공신체검사증명서(최종시험일 기준 유효할 것) 1부.

(정비사) 회전익 항공정비사 자격증 사본 1부.

(운항·관제사) 운항관리사 또는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 사본 1부.

⑪ 자격표(국방부), 병적기록표(병무청), 군부대 경력증명서 중 아래사항이 기재된 것 1부(군 경력자에 한함)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등 확인
- 당해분야의 근무부서(부대), 근무기간, 직책, 담당업무, 징계사항, 계급별 임용일자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 및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함.

⑫ 의사상자 등 증명서 및 ⑬ 취업지원대상자1부(해당자에 한함)

- 실기시험·면접시험 가산특전 대상자로서 등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보훈처(취업지원 대상자) 또는 보건복지부(의사상자 등) 발행 증명서

⑭ 폐업회사 경력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 ↳ 근무기관(업체)의 해산(폐업) 등으로 관련서류 발급이 곤란한 경우
- 근무경력 사실 확인서 1부.
↳ 【붙임 10】를 기준으로 제출하되 근무기관 자체서식이 【붙임 10】의 내용을 모두 포함할 경우 자체서식으로 제출 가능
- 폐업자 정보 사실증명서 1부.
↳ 제출한 경력이 폐업회사인 경우, 국세청의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추가 제출 - 홈텍스(www.hometax.go.kr),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⑮ 근로계약서 사본 1부.(원본 대조필 확인 - 해당자에 한함)

- 기간, 임금, 근무내역(부서 등), 근로시간, 휴일, 임금지급 방법, 사회보험 적용 등 명시

⑯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해당자에 한함) 1부.

⑰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예정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응시 상한연령 연장자
- 각 분야별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 자는 전역예정증명서 제출

《제출서류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제출 최종일(2020.7.8.)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함.
 - 사본의 규격은 A4를 기준으로 하며,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이외의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스테이플러 사용금지, 클립 또는 집게로 활용)
 - **각종 서류는 번호순으로 편철하여 제출하기 바람.**
-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초본, 법원판결문 등)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연락하여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응시자는 즉시 보완요구에 응하여야 함.
- 제출서류 확인 결과 응시원서 및 가산점 입력사항과 상이하거나, 허위증명, 자격미확인 또는 미 취득자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 또는 무효 처리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출서류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응시자는 개별 통보 함.

붙임 8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2020년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공채, 경채) 시험』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경기도에서 응시자격요건 검증을 위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이용 목적	채용 절차의 진행 및 관리, 경력·자격·학위 등 확인(조회 및 검증), 채용 여부의 결정, 민원처리,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력 조회, 법령상 의무이행 등		
개인정보 처리 근거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 제18조, 제42조, 제43조, 제49조, 제62조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6조, 제24조, 제28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7조		
수집·이용할 항목	- 성명, 주민번호,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 - 학력사항, 경력사항, 자격·면허사항, 연구논문실적, 특허실적, 병역사항,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여부,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력 등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채용 절차의 진행 및 관리, 경력·자격·학위 등 확인(조회 및 검증)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관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공받는기관	제공근거 및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항목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 시행규칙 제28조 - 경력사항의 사실관계 검증을 위한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여부 확인	- 성명, 주민번호
	국세청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 시행규칙 제28조 - 경력사항의 사실관계 검증을 위한 소득, 납세사실 등 확인	- 성명, 주민번호
	경력증명서 발급기관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 시행규칙 제28조 - 경력사항의 사실관계 검증을 위한 경력사항 사실 여부 확인	- 성명, 생년월일, 근무기관명, 근무부서명, 담당업무, 직위, 근무기간, 근무형태/근무시간
	대학 등 학위 발급 기관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 시행규칙 제28조 - 학력사항의 사실관계 검증을 위한 학위 취득여부 확인	- 성명, 생년월일, 학위명, 학위번호, 취득일자, 전공명
	자격증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 발급 기관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 제42조, 시행규칙 제28조 - 자격사항의 사실관계 검증을 위한 자격 취득여부 확인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 확인	- 성명, 생년월일, 자격증명, 자격증번호, 취득일자 - 성명, 주민번호, 보험번호 등
보유·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채용절차 종료 시까지 위 이용목적에 위하여 보유·이용되며 채용절차 종료 후에는 민원처리, 분쟁해결 및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단, 채용후보자 등록 및 합격자 명부 관리를 위하여 최종 합격자 및 예비 합격자의 개인정보는 채용 절차 종료 후부터 3년간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는 채용시험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여야만 채용 절차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시험 불합격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경기도에서 이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2020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직인)

붙임 9

경력(재직) 증명서

경력(재직) 증명서

기관 현황	회사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대상자 인적사항	성명(한글)			생년월일		
경력사항	근무기관	근무부서	직 위	담당업무	근무기간 (예시) 2010.12.25. ~ 2012.12.22.	근무 형태
	총 근무기간					
	징계사항					

위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확 인 자 1		확 인 자 2	
성 명		성 명	
연락처		연락처	
서 명		서 명	

년 월 일

사 (직인)

경기도지사 귀하

<작성방법 및 주의사항>

- 응시자가 제출한 경력사항을 참고하여 귀 사에 보유한 인사기록과 일치 여부를 우선 확인 후 작성
- 근무기관은 합병, 회사분할 등 회사명이 변경된 경우에 기재
- 경력사항은 부서별로 경력기간을 표시하며, 대학교의 경우, 연구원 경력, 강의(강사) 경력내용을 포함
- 총 근무기간은 일단위까지 계산 (예: 10년 6개월 5일)
- 근무형태는 상근, 비상근, 시간제로 구분하고, 비상근과 시간제는 주당 근무일수(시간) 표시
※ 상근 : 주 40시간 근무자, 비상근 : 주 5일 미만 근무자, 시간제 :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
- 확인자는 작성자가 직접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
- 징계사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한정
- **귀 사(근무기관) 자체서식이 위 내용을 모두 포함할 경우 자체서식으로 제출 가능**
- 소방공무원 시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문서 내용을 보안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경기도소방학교 인재개발팀 (☎ 031-329-0321 ~ 0325, 팩스 031-280-8513)
- **주의사항** : 확인서 기재사항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관련법에 따른 귀책사유에 따라 관련기관 및 대상자는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0

근무경력 사실 확인서 [업체의 폐업 등으로 관련서류 발급이 곤란한 경우]

근무경력 사실 확인서

본 사실 확인서는 해산(폐업)에 따른 경력에 대한 입증임을 인지하고 이 입증이 허위, 위조 등으로 사실과 다를 때에는 형사처벌(공문서 위조, 변조 등)등도 감수하겠음을 명심하고 다음 사실을 입증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근 무 경 력	사업체명	해산(폐업) 연도	직 위	재 직 기 간	담당업무
				00.00.00. ~ 00.00.00. (년 월)	

입증인(1) 주 소 :

성 명 : (서명)
 근무처(직위) : 주민등록번호 :
 제출자와의 관계 : 연락전화번호 :

입증인(2) 주 소 :

성 명 : (서명)
 근무처(직위) : 주민등록번호 :
 제출자와의 관계 : 연락전화번호 :

붙 임 : 폐업사실증명서 1부.

붙임 1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2020년도 소방공무원
항공전문인력 신규채용 시험” 당일 **외부인의 시험장 출입을 전면통제**합니다.

시험 진행에 대한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며, 응시자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한 시험장 조성을 위해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1. 응시자 협조 사항

- 모든 응시자는 시험 당일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 후 입실 및 퇴실 시까지 계속
마스크를 착용해 주십시오.
- 단, 신분확인 시간에는 마스크를 벗어 신분확인에 협조 바랍니다.
- 모든 응시자는 시험실 입실 전 체온 측정에 협조바랍니다.
- 체온측정 등으로 입실에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을 예상해 미리 시험장에 도착
하시기 바랍니다.
- 증상확인 후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자는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시험실 입구에 비치된 손소독제로 손 위생 후 시험실에 입장하고
화장실에 다녀와서도 반드시 손위생을 실시해 주십시오.
- 응시자는 시험장 내에서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경우 휴지, 손수건, 옷소매
등으로 가리는 등 에티켓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점심은 도시락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여럿이 함께 식사를 할 수 없으며,
자기 자리에서 이동하지 않고 점심을 드시기 바랍니다.
- 시험 중 코로나19 주요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시험감독관에게 즉시 알려 주십시오.
- 타인과 대화하지 말고 반드시 건강거리두기를 실천하여 주십시오.

2. 개인위생 관리 철저히 준수



붙임 11-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수칙







꼭! 기억해야 할 행동수칙

국민 예방수칙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발열,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피하기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특히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외출 시 꼭 준수

유증상자* 예방수칙

*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목아픔 등) 이 나타난 사람



통근·출근을 하지 않고
외출 자제하기



3~4일 경과를 관찰하며
집에서 충분히 휴식 취하기



38℃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질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관할보건소 문의 및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후 진료받기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및 자가 이용하기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여부 알리기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에서는
외출,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 철저히 따르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보는 [코로나19 공식페이지 ncov.mohw.go.kr](https://ncov.mohw.go.kr) 에서 확인하세요! 발행일: 2020. 2. 25

붙임 11-2

감염병 예방수칙(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



질병관리본부
KCDC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올바른 손씻기 6단계]



1 손바닥



2 손등



3 손가락 사이



4 두 손 모아



5 엄지 손가락



6 손등 밑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로 많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침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올바른 기침예절]



1 휴지나
손수건은 필수



2 옷 소매로
가리기



3 기침 후
비누로 손씻기

발행일 2019.11.5

붙임 11-3

코로나19 사례 및 감염병 의심자 정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7-4판 기준

□ 사례 정의

○ **확진환자**(Confirmed case)

-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진단검사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전자(PCR) 검사, 바이러스 분리

○ **의사환자**(Suspected case)

-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C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C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③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C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감염병의심자

-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관련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5의2 (2020.3.4. 시행)

붙임 11-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묻고 답하기

Q1. 코로나19의 증상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코로나19의 가장 흔한 증상은 발열, 피로 및 마른 기침이고, 일부 환자는 통증, 코 막힘, 콧물, 인후통 또는 설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대개 경미하게 나타나고, 어떤 사람들은 감염되지만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Q2. 코로나바이러스는 어떤 바이러스인가요?

- 코로나바이러스는 동물 및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바이러스로 그중 사람에게 전파 가능한 사람 코로나바이러스는 기존에 6종이 알려져 있습니다.
- 이중 4종은 감기와 같은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이며, 나머지 2종은 각각 MERS-CoV와 SARS-CoV로 알려져 있습니다.
- 이번 유행의 원인 바이러스는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로 공개된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박쥐유래 사스유사 바이러스와 89.1%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Q3. 코로나19는 어떻게 전염되나요?

- 코로나19는 감염된 사람이 기침, 재채기를 했을 때 발생한 비말이 다른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가거나, 눈·코·입 등을 만질 때 손에 묻은 바이러스가 점막을 통해 침투하여 전염이 됩니다.
- 또는 감염된 사람의 비말이 물건 표면 등에 묻은 경우, 다른 사람이 이 물건을 만진 후 눈, 코, 입 등을 만지게 되면 점막을 통해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 있습니다.

Q4. 누가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 본 지침 상의 사례정의에 따라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는 경우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막연한 불안감으로 검사를 받으실 필요는 없으므로, 의사선생님의 전문적인 판단을 신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5. 코로나19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있나요?

- 현재 알려져 있는 백신이나 치료제는 없어 증상에 따른 처치가 이루어집니다.
- 치료제가 없다는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표적치료제(targeted therapy)가 없다는 뜻이며, 치료가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Q6. 접촉자 범위는 어떻게 설정하나요?

- 접촉자의 범위는 시·도 즉각대응팀이 노출정도를 평가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접촉자는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노출력(접촉 장소·접촉 기간 등) 등을 고려하여 증상발생 2일전(무증상자의 경우 검체 채취일 기준 2일 전)부터 접촉자 범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